

예금거래기본약관 신구대비표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1조 약관 변경	<p>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(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“약관 등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</p> <p>< 신설 ></p> <p>< 신설 ></p> <p>< 신설 ></p> <p>< 신설 ></p> <p>② 은행은 <u>약관 등을</u>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<u>약관 등의</u>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(신·구조문대비표 포함)을 다음 각 호 중 1개(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)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,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<u>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</u> 인하여 긴급히 <u>약관 등을</u>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① ----- ----- “<u>약관등</u>”----- ----- <u>약관등의</u>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<u>약관등을</u>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법령의 개정,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(명령)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. 약관등의 개정이 거래처에 유리한 경우 3.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.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</p> <p>② ----- <u>약관등을</u> ----- ----- <u>약관등의</u> ----- ----- -----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반영